

과표가산율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읍·면·동에 조사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, 본청 세정과의 재산세담당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,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이 곤란시 건축물대장과 대조·비교하고, 필요시 현장확인

도 병행하여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한다.

라) 조치계획

기술적이면서도 대상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, 관련 세수증대액은 재산세 9,450천원, 도시계획세 4,220천원, 공

<표 14> 과표가산율 관련 주요조사항목

구분		주요항목	신설·변경항목
주요 대상		· 2층이상 건물 가산율 · 2층이상 건물 상가부분 가산율	
년 도 별	'92	· 가산율 : 단독주택 연면적 165~264㎡시 지하실 계산제외 단독주택 연면적 264㎡초과시 지하실 1/2 계산제외 · 감산율 : 단독주택 연면적 계산시 지하실제외	
	'94		2층이상 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(5/100)
	'95		· 공동주택 가산율대상 연면적 계산시 기존 : 공용면적 변경 : 공용부분중 지하대피소·지하주차장 면적제외 · 2층이상건물의 2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(3/100) 2층이상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변경(5/100→6/100)
	'96		· 상가부분 가산율 증가 1층 6/100 → 10/100, 2층 3/100 → 5/100 ·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가산율 신설(50/100) · 단독주택 연면적 단계별 가산율 변경 5단계 18/100~60/100 → 6단계 10/100~70/100 · 공동주택 면적가산율 기준변경 ┌ 연면적기준 → 전용면적기준 └ 7단계 → 6단계
	'98		호화 내·외장재 사용건물 가산율 신설
	2000		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인하 50/100 → 35/100